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97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3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3일, 광향기 의원 외 26명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다. 상정일자 :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4월 23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광향기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'연차별 가로수계획'을 시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'가로수기본계획'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지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1항제5호)
-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규정(안 제4조제2항)
-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진단조사 실시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가로수기본계획’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‘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’을 매년 연차별로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‘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‘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’을 수립하도록 하고, 1년 이내에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¹⁾ 사항을 준용하여 가로수기본계획 수립 시 ‘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’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(안 제4조제1항제5호) 하고,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(안 제4조제2항) 하는 한편,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경우는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(안 제4조제3항)하여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1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4. 7. 24.] [법률 제20085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조성 및 정비 계획”을 “관리계획에 관한 지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년 이내에 세부계획”을 “매년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“관리청”이란 <u>별표1</u>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 3. ~ 8. (생략) <p>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생략) 5. 연차별 가로수 <u>구성 및 정비 계획</u>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<u>1년 이내에 세부계획</u>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별표 1</u>----- -----. 3. ~ 8. (현행과 같음) <p>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관리계획에 관한 지침</u> ----- ② ----- ----- <u>매년 가로수 구성·관리계획</u>(이하 “연차별 가로수계획”이라 한다)-----.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

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
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
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